



# 유럽에 있어서의 포장폐기물 관계 규격안의 초역

A bridged Translation of the standard0Drafts on Packaging Waste in Europe VI,prEN 261-238 (Packaging-Prevention by source reduction)

(社) 日本包装技術協會 ISO/TC122國內對策委員會

## VI. prEN 261-238 (포장-발생원 삭감에 의한 감량화)

### 1. 머리말

본 문서는 CEN/TC261 “포장”에 의해 작성되었다. 본 문서는 현재 CEN의 심의에 상정되어 있다. EU법령과의 관련에 관해서는 본 규격의 일부를 이루는 참고용 부속서Z 기본적 요구사항 혹은 기타의 규정을 다루는 본 유럽규격의 조항을 참조하면 된다.

이 규격문서는 CEN에 대한 유럽위원회 의 통지하에 일련의 규격안의 하나로서 작성되었다.

명령 M200/Rev3 (Doc 29/95 EN Rev3)는 1994년 12월 통지 94/62/EEC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련되어 있다. 포장의 감량화 및 그 환경으로 미치는 영향의 방지는 통지의 중요한 목적이다. 포장의 감량화, 즉 포장폐기물 감량화를 특징화 하기 위해서는 포장의 발생원 삭감의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본 규격으로의 적용은 통보에 상세히 기술되

고 특히 제9조 그리고 부속서 II §1의 제 1단에 규정되는 특정의 기본적 요구사항으로의 적용을 보이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 2. 서문

포장의 목적은 밀봉, 보호, 유통 그리고 판매 촉진이다.

주된 역할은 제품의 손상과 분실을 방지하는 것이다. 포장을 발생처에서 줄이는 것은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사용 후 포장의 양을 줄이는 수단의 하나이다.

이것은 제품과 포장의 life cycle 전체 중에서 포장의 재사용과 회수의 면에서 사회적, 경제적 요소를 가미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평가수준은 어느 특정포장에 관해서 발생처 삭감에 따른 감량화로의 적용을 문서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생산자, 사용자, 유통업자의 어

는 누구도 사용할 수 있다.

본 유럽 규격안 에서는 발생처 삭감에 따른 감량화의 관리 시스템이 적절한지를 자기평가 하기 위한 윤곽을 보이고 있다.

본 규격에서의 대처방법은 EN ISO 9000 및 EN ISO 14000 시리즈 등의 시스템 규격에 있어서 대처 방법과 유사하다.

### 3. 적용범위

본 유럽 규격안에서는 포장재료의 중량 및 또는 용적을 아래의 세 가지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량으로 하는 것을 보증하는 평가방법의 수준에 관하여 해설한다.

- 공급자로부터 사용자까지의 일련의 흐름을 통한 기능성
- 제품 및 소비자/사용자의 양방에 대한 안전 위생
- 소비자/사용자에 대한 포장제품의 수용성

본 안은, 포장 및 포장제품을 시장에 내는 개인 혹은 조직이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규격의 참고용 부속서에서는 이 수준의 운용, 적용의 안내에 관하여 해설했다.

### 4. 규정 인용 규격

본 유럽 규격안은 낱자 유,무의 인용에 따라 다른 규격에 서술되어진 규정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 인용규격은 본문의 적절한 곳에 표기되어 있지만 그 인용규격을 아래에 나타낸다.

낱자가 있는 인용문헌에 관해서는 인용규격

그후의 수정, 개정은 그들이 수정, 개정에 의해 본 유럽규격안에 편성되었을 때에만 본 유럽 규격안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낱자가 없는 인용에 관해서는 최신판을 적용 하는 것으로 한다.

## 5. 용어와 정의

이 규격의 목적상, prEN 13193에 정해진 정의 및 다음의 정의를 적용한다.

### 5-1. 발생처 삭감에 따른 감량화

동일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성능 및 사용자의 수용성을 변화시키지 않음 또는 적절한 것을 계속유지하고, 1차, 2차, 3차 포장의 중량 및 용적을 적절하게 최소화함을 달성하고 그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

## 6. 요구사항

### 6-1. 포장의 평가

시장에 특정포장 및 포장제품을 낼 때 책임있는 개인 혹은 조직(책임단체) 은 최종포장형태의 포장중량 및 용적이 5절에 표시한 모든「성능 기준」을 고려한 다음에 적절히 최소화되고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6-2. 한계구역의 결정

책임 있는 단체는 6-1.항의 결과로서 작성된 관련기준의 전항목을 평가하고 발생처 삭감을 위한 달성한도의 기준이 되는 한계구역을 결정



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디가 한계구역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사용 포장량의 최소화에 관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으로의 적용에 기초가 된다.

한계구역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다시 발생처 삭감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 6-3. 본 규격에의 적용 (발생처 삭감)

책임있는 단체는 아래의 것을 행해야만 한다.

- 6-1 및 6-2의 단계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는 취지를 진술해야만 한다.

- 관련기준 리스트를 작성함에 사용하고 또 한계요소의 성질 및 영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관련 데이터 및 다른 정보를 문서화해야만 한다.

- 적용성명의 기초로 하기위해 check list를

이용한다든가 혹은 5절에 올린 성능기준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를 준비해야만 한다.

## 7. 성능기준 list

- 제품의 보호
- 포장생산공정
- 포장, 충전공정
- 물류전략 (수송, 보관, 화물 취급을 포함)
- 제품의 제시와 Marketing
- 소비자의 수용
- 정보
- 안전성
- 합법성
- 기타의 문제점 ko

##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1835-9041~5**